

의안번호	2201607
의 퇴 인	이상희 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계번호	24D1818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5년 266억 8,200만원~400억 2,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433억 2,500만원~2,146억 6,900만원(연평균 286억 6,500만원~429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안 제13조 (국토외곽 먼 섬에 대한 정주생활금 지원)	26,682	28,519	29,118	29,195	29,808	143,325	28,665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안 제13조 (국토외곽 먼 섬에 대한 정주생활금 지원)	40,023	42,310	43,198	44,105	45,031	214,669	42,933

-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추계 첫해인 2025년은 2025.1.17.~12.31.의 기간의 재정소요액을 산출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0조(기반 시설 설치 등)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3조(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국토외곽 먼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	특별교부금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부금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안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	국토외곽 먼섬의 노후주택 현황, 지원 비용의 범위, 지원 기준 등을 예측 곤란
3	안 제13조(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 섬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주생활지원금의 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¹⁾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거주 주민에게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월 10만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월 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²⁾하고 있음
 - 서해5도 거주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규모의 50%,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외곽 먼 섬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추계함

1)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사업인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236-300)에서 지원중, 지원 단가는 2024년 기준임

-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국토외곽 먼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국토외곽 먼섬의 인구 24,217명³⁾의 90%가 6개월 이상 해당 섬에 거주하였으며, 추계기간 동안 인구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은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을 준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거주한 주민 중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은 68%로 추정됨⁴⁾
-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⁵⁾을 적용
-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2029년까지로 함

[참고 1] 국토외곽 먼 섬 현황(34개, 2023.12.31. 기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6개월 이상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민 1인당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금액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구분
 - (시나리오1) 서해5도에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50%⁶⁾
 - (시나리오2) 서해5도에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75%⁷⁾

3)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토외곽 먼 섬에 해당하는 34개 섬의 인구를 모두 더한 것임 ([참고1])

4) 행정안전부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서 발췌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6	2.2	2.2	2.1	2.1	2.1	2.0

6) 2024년 기준 5만원(6개월 이상 거주자), 8만원(10년 이상 거주자)

7) 2024년 기준 7.5만원(6개월 이상 거주자), 12만원(10년 이상 거주자)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추계 첫해인 2025년은 2025.1.17.~12.31.의 기간의 재정소요액을 산출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	6개월 이상 거주자	12,779	13,658	13,945	14,238	14,537	69,158
	10년 이상 거주자	13,903	14,860	15,172	14,957	15,271	74,166
	합계	26,682	28,519	29,118	29,195	29,808	143,325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	6개월 이상 거주자	19,168	20,488	20,918	21,357	21,805	103,738
	10년 이상 거주자	20,855	21,821	22,279	22,747	23,225	110,930
	합계	40,023	42,310	43,198	44,105	45,031	214,669

주. 추계 첫해인 2025년은 2025.1.17.~12.31.의 기간의 재정소요액을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에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2025년 266억 8,200만원~400억 2,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433억 2,500만원~2,146억 6,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	26,682	28,519	29,118	29,195	29,808	143,325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	40,023	42,310	43,198	44,105	45,031	214,669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추계 첫해인 2025년은 2025.1.17.~12.31.의 기간의 재정소요액을 산출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자료] 국토외곽 먼 섬 현황(34개, 2023.12.31. 기준)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No	시도	시군	섬이름	육지와최단거리 (km)	인구(명)
1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72.03	104
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72.96	1,981
3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154.86	221
4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160.32	1,201
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163.63	4,875
6	전라남도	신안군	영산도	72.31	50
7	전라남도	신안군	장도	81.15	80
8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76.85	1,719
9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122.01	386
10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	85.93	70
11	전라남도	신안군	하태도	92.15	116
12	전라남도	신안군	중태도	92.84	11
13	전라남도	신안군	상태도	91.93	69
14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96.89	439
15	전라남도	신안군	대둔도	73.33	279
16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	74.56	194
17	전라남도	진도군	죽도(조도)	57.27	39
18	전라남도	진도군	곽도	58.60	21
19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도	57.56	93
20	전라남도	진도군	동거차도	50.24	119
21	전라남도	진도군	상하죽도	50.17	12
22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도	50.73	98
23	경상북도	울릉군	죽도	143.68	1
24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136.26	9,042
25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217.54	34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양도	101.82	140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	95.4	1,618
2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파도	126.68	216
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132.41	89

주. 전라남도 신안군의 가거도와 홍도는 영해기점 섬과 중복
자료: 행정안전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No	시도	시군	섬이름	수역	기점	인구(명)
1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남해안	10	485
2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남해안	11	100
3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소흑산도)	서해안	14	386
4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서해안	16	439
5	전라남도	영광군	횡도	서해안	18	3
6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서해안	19	50
7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서해안	21	262

주. 전라남도 신안군의 가거도와 홍도는 50km이상 떨어진 섬과 중복
자료: 행정안전부